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주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탁주·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한편,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탁주·맥주에 대한 세율 변경(안 제7조제1항)

탁주·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(5.1%)의 70%를 반영한 3.57%로 하고, 이에 따라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1킬로리터당 44,400원,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5,700원으로 하여,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적용함.

나.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 정비(안 별표 1)

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, 소주 첨가재료 중 '당분'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19. ~ 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및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”을 “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”로, “세율”을 “가격변동지수 및 이에 따른 세율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탁주: 1킬로리터당 44,400원(가격변동지수: 3.57%)
2. 맥주: 1킬로리터당 885,700원(가격변동지수: 3.57%)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.

■ 주세법 시행령 [별표 1]

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(제3조제1항 관련)

1.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

주류 종류	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
가. 법 별표 제2호나목4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 및 법 별표 제3호가목1)부터 4)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
나. 법 별표 제2호다목2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다. 법 별표 제2호라목3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라. 법 별표 제2호마목5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, 브랜드, 일반 증류주
마. 법 별표 제3호나목5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바. 법 별표 제3호다목2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
2.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

가. 주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

주류 종류	첨가할 수 있는 재료	비고
1) 법 별표 제2호가목3)	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효소처리스테비아 · 사카린나트륨 · 젖산 · 주석산 · 구연산 · 아미노산류 · 수크랄로스 · 토마틴 · 아세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산탄검 ·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· 당분 · 알룰로오스, 「식품위생법」상 허용되는 식물(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. 이하 "식물"이라 한다)	· 식물을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알코올분 총량은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2) 법 별표 제2호나목3)	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효소처리스테비아 · 젖산 · 주석산 · 구연산 · 아미노산류 · 식물 · 수크랄로스 · 토마틴 · 아세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당분	
3) 법 별표 제2호다목1)	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효소처리스테비아 · 젖산 · 주석산 · 구연산 · 아미노산류 · 식물 · 수크랄로스 · 토마틴 · 아세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	· 식물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.
4) 법 별표 제2호다목2)	당분 · 산분(酸分) · 조미료 · 향료 · 색소	· 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.

5) 법 별표 제2호라 목2) 및 3)	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향료 · 색소 · 식물 · 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솔비톨 · 수크랄로스 · 아세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효소처리스테비아 · 우유 · 분유 · 유크림 · 아스코르빈산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· 증점제 ·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	
6) 법 별표 제2호마 목4) · 마 목5)	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향료 · 색소 · 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솔비톨 · 수크랄로스 · 아세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효소처리스테비아	
7) 법 별표 제2호마 목6)	사카린나트륨 · 아스코르빈산 · 식물 · 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솔비톨 · 수크랄로스 · 아세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효소처리스테비아	
8) 법 별표 제3호가 목2) 및 7)	당분 · 구연산 · 아미노산류 · 솔비톨 · 무기염류 · 스테비올배당체 · 효소처리스테비아 · 사카린나트륨 · 아스파탐 · 수크랄로스 · 토마틴 · 아세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다(茶)류(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) · 알룰로오스 · 오크칩	· 당분은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.
9) 법 별표 제3호나 목5)	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향료 · 색소	
10) 법 별표 제3호다 목2)	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향료 · 색소	
11) 법 별표 제3호라 목6)부터 10)까지	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향료 · 색소 · 식물 · 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솔비톨 · 수크랄로스 · 아세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효소처리스테비아	
12) 법 별	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향료 · 색소 · 식물 ·	

표 제3 호마목	아스파탐 · 스테비올배당체 · 솔비톨 · 수크랄로스 · 아세실팜칼륨 · 에리스리톨 · 자일리톨 · 효소처리스테비아 · 우유 · 분유 · 유크림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· 증점제 ·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	
13) 법 별 표 제4 호다목	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캐러멜색소	

※ 비고: 위 표에 따른 재료 중 당분 · 산분 · 조미료 · 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.

구분	첨가재료의 종류
1. 당분	설탕(백설탕 · 갈색설탕 · 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) · 포도당(액상포도당 · 정제포도당 · 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) · 과당(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) · 엿류(물엿 · 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) · 당시럽류(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) · 올리고당류 · 유당 또는 꿀
2. 산분	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(酸度)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
3. 조미료	아미노산류 · 글리세린 · 텍스트린 · 홉 · 무기염류 · 탄닌산 · 오크칩
4. 향료	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
5. 색소	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

나.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

주류에는 가목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.

- 1) 이산화탄소, 질소, 산소
- 2)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(保存料)로 사용되는 것
- 3)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세율) ① <u>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및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</u>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<u>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</p> <p>1. <u>탁주: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1,900원,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2,900원</u></p> <p>2. <u>맥주: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34,400원,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55,200원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7조(세율) ① <u>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</u>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격변동지수 및 이에 따른 세율</u>--.</p> <p>1. <u>탁주: 1킬로리터당 44,400원</u> <u>(가격변동지수: 3.57%)</u></p> <p>2. <u>맥주: 1킬로리터당 885,700원</u> <u>(가격변동지수: 3.57%)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3